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554호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1. 19. ~ 2026. 12. 4.
2.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 명령 대상입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운행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어 운행정지 명령 예고를 통지하였으며, 예고 통지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였습니다.
   다. 운행정지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을 임시운행 할 수 있으며, 임시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라.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2)

2026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